

붙임6

[서울시 질의회신]

- 중구청 교통지도과 주차장법령에 관한 질의에 서울시(주차계획담당관)회신
(2009. 7. 28)

[질의내용]

· 주차장법 제19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로 보아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.

[회신내용]

· 주차장법 제19조의4제4항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

· 건축법 제79조제2항에 의해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,

·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으로 주차장법 제19조의4제4항에 의해 위반건축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영업이나 그 밖에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, 건축법 제79조제4항에 의한 위반건축물 표시 및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 기재 등의 관한 사항은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됨.